

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	전자우편주소	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
감면대상	종류 (아파트□ 연립□ 다세대□ 단독주택 □)	주택가격(거래가격)
	소재지	
감면 세액	감면세목	과세연도
	과세표준액	감면구분
	당초 결정세액	감면받으려는 세액
감면 신청 사유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)	(뒷면 참조)	
<p>① 무주택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</p> <p>주민등록등본 □ 주민등록초본 □ 가족관계증명서 □ 기타 확인서류 ()</p> <p>※ 세대주의 배우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</p> <p>※ 세대주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필요(세대주의 배우자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)</p> <p>※ 주민등록등본(초본)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·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와 관련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</p> <p>② 무주택1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</p> <p>※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, 생애최초 무주택1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(2020-43호)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에 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) 수집·이용에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</p> <p>☞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</p> <p>③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</p> <p>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 □ 사실증명원(기타) 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□</p> <p>② 기타 확인서류 ()</p> <p>※ 직전년도 종합소득(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)이 있는 신청인(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합산)이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,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소득 7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신청인의 소득정보(종합소득금액)를 보유하고 있는 관리기관(국세청)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) 수집·이용에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</p> <p>☞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감면요-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</p>		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,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※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
		없음

210mm × 297mm 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*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

① 생애최초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.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1가구 구성원 모두 및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, 신청인(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)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. (예 아니오)

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²⁾	소득금액(원) ³⁾	주택소유 사실 여부
감면신청인				
감면신청인의 배우자				
세대주 ¹⁾				
세대주의 배우자 ¹⁾				
그 외 세대원 ²⁾ ()				
그 외 세대원 ²⁾ ()				

- 1) 감면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재합니다.
- 2) 감면신청인 기준으로 관계를 기재합니다.
- 3) 소득금액란은 감면신청인과 그 배우자만 기재하며,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금액을 기재합니다.
 -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,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재합니다.

②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

-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(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)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.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처분하지 않았음 해당사항 없음
-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(수도권은 제외한다)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*을 처분하여야 합니다.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처분하지 않았음 해당사항 없음
 - 다만,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*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.
 - *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, 85㎡이하 단독주택,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
-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㎡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. 이와 관련 그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1호만 소유하고 있음 처분하였음 해당사항 없음
-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.
- ⑤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간주한다.

③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.

- 신청인이 작성 · 기재한 감면신청서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.
- 다만,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 ·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(10~40%)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6조의3 제4항)

- | |
|---|
|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.)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|
|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(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,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)이 되지 아니한 경우 |
|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경우 |
- 또한,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